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주호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연구·근무 실적 갖춘 자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의 공고
일수를 규정

3. 주요내용

경력경쟁채용(교육공무원법 제12조) 시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
채용공고를 게시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학교원을 경력경쟁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분야·채용인원·지원자격·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·관보 또는 정보통신망,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2(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9조의2(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학교원을 경력경쟁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분야·채용인원·지원자격·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·관보 또는 정보통신망,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938